

법제처, 2024년 1분기 우수 조례안 선정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선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1분기 우수 조례안’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붙임 참조)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문의 체계와 용어는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 검토안을 지원하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4건의 우수 조례안은 올해 1분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실시한 입법컨설팅 사례 중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설문조사와 4대 지방협의체의 자문을 거쳐 선정한 것이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법제처가 발간하는 『2024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제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 1분기 우수 조례안 4선

담당 부서	자치법규입안지원과	책임자	과 장	유태동	(044-200-6747)
		담당자	사무관	이동진	(044-200-6793)



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 **문화·체육**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이 조례안은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과 문화적 특색이 어우러진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형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목적으로 걷기 운동을 위한 거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이 조례안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됨.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이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안녕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조하는 사회적 공감대에 맞추어 이 조례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사 정책을 입법화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③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림·환경**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이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는 이 조례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국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됨.

④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정·경제**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이 조례안은 위임조례로서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임조례는 법령위임사항을 충실히 규정하면서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에서 이 조례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개정할 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됨.